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5일,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현행법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아울러 대도시 내 법인 및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비수도권 대도시는 1.3%p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은 1.1%p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국내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95.5%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제79조 및 제8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75조의3제1항)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사업전환을 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된 산업의 침체, 대규모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사업의 전환, 축소, 폐업 등으로 지역의 경제가 악화되고, 고용이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전환은 기업 차원에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을 늘리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별제한법」 제75조의3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에 지방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에도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국제 공급망이 변화하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에 따른 최근 5년간 감면 실적 이 저조한데, 그 원인은 감면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①위기지역에 위치, ②특정 업종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업종전환 승인)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비교적 많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달성도(감면 실적)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

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0.006억원(연평균 0.00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 지방 이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개정안 제79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¹⁾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경감 및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하려는 것임.

과밀억제권역²⁾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부동산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받음.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가 있어 이전·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구체적인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등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가 포함됨.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 향후 3년 동안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 본점 및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인센티브로 기능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의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및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34건으로 비중이 80%로 높음. 경기도 중에서는 김포시(47건) 과주시(45건), 화성시(39건), 남양주시(37건), 용인시(32건) 등이 많은 감면실적을 보이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V)의원안, 임미애의원안, 한병도(Ⅲ)의원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66.4억원(연평균 55.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3) 지방 이전 공장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개정안 제80조)

개정안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면제·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에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 부분임³⁾.

개정안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인구의 분산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건수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5건, 경기도 244건, 충청북도 6건, 충청남도 14건의 감면 실적이 있었음.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V)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및 한병도(Ⅲ)의원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91.3억원(연평균 3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